

취업규정

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 또는 허드렛일만 지시하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창원경륜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괴롭힘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승인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2019년 7월 16일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u></p>
<p><u><신 설></u></p>	<p><u>제6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u> ① <u>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u></p> <p>② <u>직원은 다른 직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u></p>
<p><u><신 설></u></p>	<p><u>제6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u> <u>공단에서 금지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u> 2. <u>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u>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업무능력 또는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 또는 허드렛일만 지시하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7.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신 설>

제6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 설>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창원경륜공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을 준용한다.

<신 설>

제6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괴롭힘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를 전환하거나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적절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